
제8부

기타 정관 문서

권장 로타리클럽 세칙

국제로타리 로타리재단 세칙

국제로타리 로타리재단의 법인
설립 규약(발취)

권장 클럽 세칙

조항	제목	페이지
제1조	정의	255
제2조	이사회	255
제3조	이사 및 임원 선거	255
제4조	임원의 의무	256
제5조	회합	256
제6조	입회비 및 회비	257
제7조	투표 방법	257
제8조	4대 봉사	257
제9조	위원회	257
제10조	위원회의 임무	258
제11조	출석 의무 면제	258
제12조	재정	258
제13조	회원 선출 방법	259
제14조	결의	259
제15조	회의 진행 순서	259
제16조	개정	260

로타리클럽 세칙*

제1조 정의

1. 이사회: 본 로타리클럽 이사회
2. 이사: 본 로타리클럽의 이사회 구성원
3. 회원: 명예회원을 제외한 본 로타리클럽 회원
4. RI: 국제로타리(Rotary International)
5. 연도: 7월 1일에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

제2조 이사회

본 클럽의 관리 기관은 클럽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또는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회원), 총무, 재무 그리고 사찰 등 _____ 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이다. 그러나, 클럽 이사회는 클럽 세칙 제3조 1항에 의거, 이사회 재량으로 선출한 _____ 명의 이사와 직전 회장을 이사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조 이사 및 임원 선거

제1항—임원을 선출하는 연차 총회 1개월 전의 주회에서 의장은 클럽 회원들에게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그리고 _____ 명의 이사회 이사 등을 지명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원 지명은 지명위원회에서 하거나 주회에서 회원들이 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택일 방법은 클럽이 결정한다. 만일 지명위원회 방법을 결정한 경우라면, 클럽의 결정에 따라 지명위원회가 임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식으로 추천된 후보자 명단은 각 직책 별로 가나다순으로 투표 용지에 기입되어 연차 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회장, 부회장, 총무, 그리고 재무 등의 후보자 가운데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들을 해당 직책에 선출된 것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총 투표수 가운데 과반수를 얻은 _____ 명의 이사 후보들을 선출된 이사로 발표하여야 한다. 회장 투표를 거쳐 선출된 차차기 회장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로타리 연도 동안 차기회장 자격으로 이사회의 일원이 되며, 그 다음 연도의 7월 1일부터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차차기 회장은 회장 임기 전년도 7월 1일부터 차기회장의 직함을 갖게 된다.

제2항—이렇게 선출된 임원과 이사, 그리고 직전 회장 등으로 이사회가 구성된다. 차기이사들은 선출된 후 1주일 이내에 회합을 갖고 사찰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항—이사회 또는 임원직에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나머지 이사들이 결정하여 충원한다.

제4항—차기이사 또는 차기 임원직에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나머지 차기이사들이 결정하여 충원한다.

*주: 본 세칙은 권장 세칙으로, 각 로타리클럽은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국제로타리 정관 및 세칙, 그리고 정책 규약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클럽 사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만일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안을 국제로타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국제로타리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임원의 의무

제1항—회장. 회장은 클럽의 회합과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며, 일반적으로 회장직에 속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2항—차기회장. 차기회장은 클럽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가 정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3항—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부재 중일 때 클럽 회합과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며, 일반적으로 부회장직에 속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4항—총무. 총무는 회원 기록 관리, 회합 출석 기록, 클럽 회합과 이사회 및 위원회 회합 통지 발송, 그러한 회합들의 의사록 작성 및 보관, RI에 각종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보고서 제출에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국제 로타리 사무총장에게 보내야 하는 클럽 회원 반기 보고서를 비롯하여, 1월 또는 7월 반기 보고 기간이 시작된 후에 클럽 정회원으로 선출된 모든 회원에 대한 비례 할당 보고서와 회원 변동 보고서가 포함된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클럽 주회의 월별 출석 보고서를 지구총재에게 제출하고, 로타리안 공식잡지 구독료를 수급하여 RI에 송금하는 등, 기타 일반적으로 총무직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5항—재무. 재무는 클럽의 모든 자금을 관리, 보관하고 매년 그리고 이사회의 요청 시, 클럽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클럽에 보고하며, 기타 재무직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재무가 임기를 마치는 경우, 모든 자금과 장부, 또는 기타 클럽 재산을 차기 재무 또는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항—사찰. 사찰은 일반적인 사찰의 임무와 회장 또는 이사회가 지시하는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 회합

제1항—연차 총회. 본 클럽의 연차 총회는 매년 _____ 에 개최하며, 연차 총회에서 다음 연도의 임원과 이사를 선출한다.

(주: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 6조 2항은 “클럽 임원 선출을 위한 연차 총회는 12월 31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본 클럽의 주회는 매주 _____ 요일 _____ 시에 개최한다.

주회의 변경 또는 취소는 클럽 회원 전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명예회원 (또는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규정에 의거, 본 클럽 이사회에서 출석 규정의 면제를 받은 회원)을 제외한 클럽의 모든 모범적인 회원들은 주회 날짜에 출석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리고 출석은 본 클럽 또는 타 클럽 주회 개최 시간 중 적어도 60 퍼센트 이상 참석하거나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9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석보전을 하였을 경우에 인정된다.

제3항—본 클럽의 연차 총회 및 주회의 정족수는 총 회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4항—정기 이사회는 매월 _____ 에 개최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이사 2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히 사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제5항—이사회는 정족수는 재적 이사 과반수로 한다.

제6조 입회비 및 회비

제1항—클럽 입회비는 _____ 이며,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제 11조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입회 승인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회비는 연간 _____ 이며, 7월 1일과 1월 1일, 연 2회 납부하여야 한다. 반기 회비 중에서 일부는 각 회원의 로타리안 공식잡지 구독료이다.

제7조 투표 방법

본 클럽의 안건은 구두 표결로 처리한다. 단, 이사와 임원의 선출은 투표에 의한다. 이사회는 특정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구두가 아닌 투표로 처리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4대 봉사

로타리의 4대 봉사, 즉 클럽봉사, 직업봉사, 사회봉사, 그리고 국제봉사 등은 로타리클럽 활동의 철학과 실질적인 골격을 이룬다. 본 로타리클럽은 로타리 4대 봉사 부문 각각을 힘써 시행한다.

제9조 위원회

클럽 위원회는 4대 봉사 부문에 기초한 클럽의 연차 목표 및 장기 목표 활동을 책임진다. 차기 클럽 회장, 현 회장, 그리고 직전 회장은 리더십 및 클럽 계획의 연속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클럽 활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들은 같은 위원회에 3년 동안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기 회장은 위원회의 공석을 충원하고, 위원장을 임명하며, 회장 취임 전에 연차 활동 준비 모임을 개최할 책임이 있다. 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회원을 임명할 것이 권장된다.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 회원
동 위원회는 신입회원 영입과 기존회원 유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개발, 실시한다.
- 홍보
동 위원회는 일반인들에게 로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클럽의 봉사 프로젝트 및 활동을 홍보하는 계획을 개발, 실시한다.
- 클럽 관리
동 위원회는 클럽의 모든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 봉사 프로젝트
동 위원회는 소속 지역사회와 국제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육, 인도주의, 직업 프로젝트를 개발, 수행한다.
- 로타리재단
동 위원회는 재정지원과 프로그램 참여 양쪽 모두를 통해 로타리재단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실시한다.

특별 추가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구성한다.

(가) 회장은 모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각 위원회는 세칙에 명시된 본연의 임무를 관장하여야 하고 회장과 이사회가 위임한 다른 부차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이사회가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임무

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어떤 행동도 취해서는 안된다.

(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례 회합과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위원회의 업무를 감독, 조정하고 위원회의 모든 활동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 상기 위원회 조직안은 지구 리더십 플랜 및 클럽 리더십 플랜과 일치한다. 그러나 클럽들은 효과적인 봉사 활동이나 친목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언제라도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클럽 위원회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클럽은 이와는 전혀 다른 위원회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임무

클럽 회장은 자신의 임기에 대비하여 각 위원회의 임무를 검토, 확정지어야 한다. 각 위원회의 임무를 확정할 때에는 관련 RI 자료들을 참조해야 한다. 봉사 프로젝트 위원회는 연중 계획을 개발할 때에 직업봉사, 사회봉사, 그리고 국제봉사 등의 각 부문을 고려해야 한다.

각 위원회는 임기 중에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와 분명히 정의된 목표 그리고 실천 계획 등을 임기가 시작되는 연도 초에 확정지어야 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사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 위원회의 업무와 목표, 실천 계획 등에 대한 추천안을 준비하는 클럽 위원회에 지도력을 제공하는 것은 차기회장의 일차적인 책임 사항이다.

제11조 출석 의무 면제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를 적은 서면 요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는 특정 기간 동안 회원의 클럽 주회 출석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주: 이러한 출석 의무 면제는 회원의 자격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클럽에 회원 출석 크레디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출석 의무를 면제 받은 회원이 다른 클럽의 주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다만,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규정에 의한 출석 의무 면제는 클럽의 출석표에 기록되지 않는다.)

제12조 재정

제1항—이사회는 회계 연도 초에 해당 연도의 예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그 예산안은 이사회가 별도로 의결하지 않는 한, 각각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한도가 된다. 클럽의 예산안은 클럽 운영에 대한 부분과 자선/봉사 활동을 위한 부분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제2항—재무는 본 클럽의 모든 자금을 이사회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클럽 기금은 클럽 운영과 봉사 프로젝트 등 2 부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제3항—모든 청구서는 임원 2명이 서명한 영수증에 의거, 재무가 서명한 수표로 지급되어야 한다.

제4항—본 클럽의 모든 회계 업무는 유자격자에 의하여 매년 1회 전반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5항—클럽의 자금 관리에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자금 관리를 책임진 임원은 이사회에 요구가 있을 때에 보증금을 맡겨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 클럽이 부담한다.

제6항—본 클럽의 회계 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이며, 회비 징수의 목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반기로 구분된다. 1인당 회비와 로타리안 공식잡지 대금은 매년 7월 1일과 1월 1일 현재의 클럽 회원 수를 기준으로 국제로타리에 납부되어야 한다.

제13조 회원 선출 방법

제1항—클럽 정회원이 추천한 회원 후보자의 명단은 서면으로 총무를 경유하여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적 회원 또는 타 클럽의 전 회원은 이전 소속 클럽에 의해 정회원으로 추천될 수 있다. 이 절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추천한 내용에 대하여는 당분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2항—이사회는 해당 추천이 클럽 정관의 회원 자격 및 모든 직업분류 규정에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이사회는 추천서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클럽 총무를 경유, 그 결정을 추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이사회가 찬성할 경우, 해당 회원 후보자에게 로타리의 목적과 회원으로서의 특전과 책임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하며, 그 후 해당 회원 후보자에게 회원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게 하고 자신의 이름과 직업분류를 클럽에 발표하는 데 대하여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항—회원 후보자의 명단을 공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클럽 회원(명예회원 제외)으로부터 해당 추천을 반대하는 분명한 사유를 명기한 서면 이의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는 본 클럽 세칙 규정에 따라 입회비 납부(명예회원이 아닌 경우)와 동시에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사회에 이의서가 접수되면 이사회는 다음 회합에서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추천된 회원은 입회비(명예회원이 아닌 경우)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6항—회원 선출 후, 회장은 신입회원 입회식을 계획하고, 회원증을 발급하며, 적절한 문헌을 제공해야 한다. 회장 또는 총무는 RI에 신입회원 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장은 신입회원이 클럽 프로젝트나 활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회원 1명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7항—클럽은 클럽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추천한 명예회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4조 결의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본 클럽을 기속하는 결의나 제안이 이사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클럽에서 심의될 수 없다. 클럽 주회에서 이러한 결의 또는 제안이 직접 제기되었을 때에는 토론없이 바로 이사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제15조 회의 진행 순서

- 개회 선언
- 방문 로타리안 소개
- 소식 및 공지 사항
- 위원회 보고 (보고 사항이 있는 경우)
- 미결 안건
- 신규 안건
- 강연 또는 기타 프로그램
- 폐회

제16조 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정족수가 출석한 주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될 수 있다. 단, 개정안은 적어도 주회 1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우송되어야 한다. 본 세칙의 개정 또는 추가는 본 클럽 정관과 국제로타리의 정관 및 세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국제로타리 로타리재단의 세칙

조항	제목	페이지
제1조	법인의 목적	263
제2조	회원	263
제3조	관리위원회	263
제4조	관리위원회 회합	266
제5조	법인의 임원	266
제6조	위원회	268
제7조	관리위원회와 법인 회원 이사회의 공동 위원회	268
제8조	재무 보고	269
제9조	기타	269

국제로타리 로타리재단의 세칙

제1조 법인의 목적

제1.1항 — 목적. 본 법인의 목적은 법인 설립 규약에 규정된 바와 같다.

제2조 회원

제2.1항 — 회원. 본 법인은 한 종류의 회원으로 그리고 이는 “법인 회원”으로 지정받은 유일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최초의 법인 회원은 일리노이주의 비영리 법인인 국제로타리 또는 통합, 정리,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그의 계승자이다. 어떤 이유로든 법인 회원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본 법인의 관리위원회가 법인 회원을 새로 선출한다.

제2.2항 — 선출 및 임명. 매년 법인 회원은 임기가 만료되는 관리위원을 대체하고 공석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관리위원을 임명한다. 법인 회원에 의한 이러한 결의는 연례 회합에서 행해진다.

제2.3항 — 결의 방법. 법인 회원은 본 항의 규정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RI 이 사회의 과반수 투표로 결의한다. 법인 회원 중 1명의 임원이 결의 내용을 진술하여 서명한 문서로 이 법인의 의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제2.4항 — 법인 회원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관리위원회의 다음 조치들은 법인 회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재단 재산의 지출; 단, 다음은 예외이다.

- 1) 재단 관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 2) 증여 또는 유증이라는 조건이 붙은 재단 기부 수익 또는 원금의 지출은 모두 관리위원회의 승인만으로 충분하다.

(나) 법인 설립 규약 또는 세칙에 있는 조항을 개정 또는 다시 수정하는 경우

(다) 법인의 모든 실질적 재산을 통합하고 정리하며, 해산 또는 매각, 임대차교환, 저당을 잡히거나 담보물로 제공할 경우

(라) 법인 설립 규약에 설명되어 있는 목적을 위하여 제안된 본 법인의 모든 프로그램 또는 사업과 활동 등을 공표하기 전에 또는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 실시할 경우.

제2.5항 — 법인 회원의 책임. 법인 회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가) 국제로타리의 임원과 모든 로타리안들에게 개인적인 참여와 재정적인 기부를 통하여 재단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또는 각종 활동들을 후원하고 클럽 및 지구 활동, 국제회의, 지도력 개발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간행물 등을 통해 재단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홍보할 것을 권장한다.

(나) 관리위원회에 재단의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또는 활동 사업을 제안한다.

제3조 관리위원회

제3.1항 — 일반 권한. 본 법인의 이사는 관리위원이라고 한다. 본 법인의 모든 업무는, 본 세칙 제2.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어떤 사안에 대해 법인 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위원회에 의해 처리된다.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리위원회는 1986년의 일리노이주 일반 비영리법인법 또는 미국

일리노이주가 채택하는 그 이후의 법에 따라 현재 또는 앞으로 재단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이러한 권한은 로타리재단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거나 1986년 미국 내국세 징수법 제501조 (c)3항에서 규정한 단체로서의 자격에 부합되는 재단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 (가) 재단의 모든 기금과 재산을 보관하고, 투자, 관리, 운용한다. 이러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관리위원회는 법령이나 재단 세칙이 인정하는 권한 이외에 다음 사항들을 이행할 권한이 있다.
 - 1) 최대한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되는 가격과 조건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재단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 양도 또는 교환하는 일
 - 2)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위임장 발행, 대리권의 부여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일
 - 3) 재단 기금의 투자로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대부, 증권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재투자하는 일
 - 4) 재단에 들어오는 자금 또는 재산을 재단의 일반 목적 달성을 위한 비제한기금으로 보유할 것인지 또는 특별 목적 사업을 위한 제한기금이나 증여기금으로 보유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비제한 또는 제한기금에 대한 경비나 손실 금액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충당하거나 할당하는 일
 - 5) 법인의 기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관리위원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관할법이 허용하는 권한을 위임받는 투자 관리인을 고용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중개인과 대리인을 선정하고 고용하며, 그들에게 합당한 보수와 비용을 지급하는 일
 - 6) 재단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위하여 예산을 채택하고 기금을 충당하는 일
 - 7) 법인 회원의 이사회가 달리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 관리위원회의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재단 관리비를 재단 기금에서 지급하는 일
- (나) 비록 수탁인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단을 대신하여 수탁인으로서의 임장을 평가, 수용, 거절하거나 일리노이주 신탁법과 기타 적용 가능한 일리노이주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탁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며, 수탁인의 자격이든 기타 다른 자격으로 재단이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할 때 어떤 재산이나 기금 또는 기타 법적 또는 수익상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양도를 거절, 승인 또는 보류할 수 있다.
- (다) 공동 투자 기금과 같은 투자 합작 활동을 시작하거나 관리, 경영, 또는 참여할 수 있다.
- (라) 재단의 모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그리고 활동을 관리한다. 단, 관리위원회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회원이 또는 이들 양자의 협조 하에 관리하기로 관리위원회와 법인 회원이 동의한 재단의 특정 프로그램이나 사업 또는 활동 등은 예외이다.
- (마) 재단이 기금을 마련한 모든 프로그램, 사업 그리고 여러 활동을 계속 평가하고 재단이 지급한 모든 장학금과 보조금에 관하여 법인 회원에게 매년 보고한다.

- (바) 로타리재단을 발전시키고 재단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며 재단을 후원해 준 개인과 로타리클럽, 그리고 기타 여러 사람 등을 적절히 표창한다.
- (사) 재단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또는 활동을 개발하고 새로 제안하는 데 1차적인 책임을 진다.
- (아) 전세계 어떤 국가나 지역에서 관련 하부조직 또는 기타 자선 단체, 재단, 신탁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하거나 이와 제휴할 수 있다.
- (자) 법인 회원 이사회가 제출한 재단과 관련된 결의안이나 재단 관련 세칙 및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심의회가 심의하기 전에, 심의, 승인한다. 만약 그러한 개정안과 결의안을 다른 관계자가 제안하였을 경우 관리위원회와 법인 회원 이사회는 규정심의회가 심의하기 전에 그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심의한다.
- (차) 관리위원회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재단 관리를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추가로 채택하고 개정한다. 단, 그 세칙과 규정이 법인 회원의 정관과 세칙 또는 재단법인 설립 조항과 본 세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제3.2항 — 인원수, 임명, 그리고 임기. 관리위원은 15명이다. 관리위원들은 법인 회원의 회장이 법인 회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관리위원들 중에서 4명은 법인 회원의 전 회장이어야 한다. 관리위원회의 임기는 4년이다. 관리위원들은 임기 만료 후에 재임명 될 수 있으나, 그런 경우 그들은 본 항과 본 세칙 제3.3항에 규정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각 관리위원은 사망하거나 사임 또는 임무 수행 불능으로 해임될 때까지 자격 상실 사유가 없다면 임기 동안 또는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갖게 될 때까지 위원직을 보유한다.

제3.3항 — 자격 요건. 모든 관리위원은 로타리클럽의 명예회원이 아닌 정회원이어야 한다. 모든 관리위원은 풍부한 로타리 경험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재정이나 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각종 활동 분야의 관리직 및 정책 결정의 경험이 있는 로타리안이어야 한다. 관리위원들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임명되어야 한다.

제3.4항 — 사임. 관리위원은 누구나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구두로 사임하거나 본 법인의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사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의 사임은 정식으로 수리되지 않아도 그러한 의사 표시를 한 경우 발표되는 것으로 한다.

제3.5항 — 해임. 본 세칙 제 3.3항에 설정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관리위원은 법인 회원 또는 나머지 관리위원의 결의없이 그 시점에서 관리위원의 직위를 상실한다. 본 조항에 의해 관리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면 본 세칙 제3.6항에 따라 교체되어야 한다. 관리위원회 및 법인 회원의 판단에 따라 어느 관리위원이 신체적 장애가 있어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고 간주될 경우 해당 관리위원은 이러한 결정에 따라 관리위원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며 본 세칙 제3.6항의 규정에 따라 교체된다.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청문할 기회가 주어짐), 모든 관리위원들과 관련 위원에게 통보한 경우, 법인 회원 이사회의 4분의 3의 찬성 투표로 관리위원을 해임시킬 수 있다. 그러한 해임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는 법인 회원의 차기 국제대회에서 과반수 투표로 비준(批准)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3.6항 — 결원. 사망, 사임, 자격상실, 임무 수행 불능 또는 해임 등으로 인한 관리위원의 결원은 본 세칙 제 3.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인 회원이 잔여 임기를 맡을 사람을 임명한다. 후임 관리위원은 모든 권리와 재량권을 가지며 전임자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임무를 갖는다.

제3.7항 — 위원장. 관리위원회는 매년 관리위원들 중에서 1명을 차기 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차기 관리위원장은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다음 연도에 위원장

이 된다. 위원장이 사망하거나 임무 수행이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해임되었을 경우 차기 관리위원장이 남은 기간 동안 위원장이 된다.

제3.8항 — 보수. 관리위원들은 무보수로 봉사한다.

제4조 관리위원회 회합

제4.1항 — 연례 회합. 재단 관리위원회는 매년 동 위원회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연례 회합을 개최하며, 그 장소는 일리노이주 안이거나 밖이 될 수 있다.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길 경우, 관리위원회와 법인 회원의 이사회는 연례 회합 기간 동안 합동 회합을 개최할 수 있다.

제4.2항 — 기타 회합.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관리위원들의 과반수가 다른 관리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수시로 소집될 수 있다.

제4.3항 — 회의 통고. 서면 통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모든 위원회 회합의 개최 시간(날짜와 시간)에 대한 서면 또는 인쇄물 통지서는 회의 개최일 최소한 30일 전에 해당 위원의 거주지나 통상적인 사업장으로 우송되거나, 혹은 회의 개최일 최소한 20일 전에 전신, 전화 또는 개별적인 전달 방법으로 해당 위원에게 전해져야 한다. 특별 회합을 알리는 경우는 적어도 회합 10일 전까지 통지서가 우송될 수 있도록 하거나 6일 전까지 전보나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면 통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회의가 정당하게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의 처리를 반대할 목적으로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4.4항 — 정족수와 결의 방법. 그 당시 자격이 있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리위원들의 과반수가 모든 관리위원회 회합에서 임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가 되며,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모든 문제는 본 세칙이나 규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출석 관리위원의 과반수 찬성 투표로 결정된다. 정족수가 안될 경우,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족수가 될 때까지 회합을 연기할 수 있다. 회합이 연기된 경우, 통지할 필요가 없다.

제4.5항 — 비공식 결의. 관리위원회 회합에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안건들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투표 자격이 있는 관리위원 전원이 그 사안이 기재되어 있는 서면에 동의 서명을 할 경우, 회합을 개최하지 않고서도 결의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그 문제가 기존의 방침에 속할 경우 우편 투표를 발송할 권한이 있다. 그 문제가 기존의 방침 밖일 경우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우편 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또는 다음 관리위원회 회합 때까지 보류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제4.6항 — 전화를 이용한 회의. 회합에 참가하는 모든 관리위원들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회의용 전화나 기타 통신 장비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관리위원회 회합에 참가할 수 있으며, 또한 결의할 수 있다. 이러한 원거리 통신 방법에 의한 회합은 관리위원들이 실제로 회의에 직접 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7항 — 회의 주재자.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모든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 차기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없을 경우 관리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5조 법인의 임원

제5.1항 — 호칭. 본 법인의 임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의장”), 차기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이다.

제5.2항 — 선거, 임기, 그리고 보수.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년 임기로 매년 관리위원회가 선출한다. 차기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차기 위원

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선출 후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차기 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관리위원은 차기 위원장으로서 1년 봉사한 후, 1년 임기의 위원장에 취임한다.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다. 사무총장은 법인 회원의 이사회가 선출하며 법인 회원의 사무총장과 동일인이다. 각 임원은 사망하거나 사임 또는 임무 수행 불능으로 자격상실이나 해임되지 않으면 임기 동안 또는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갖출 때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위원장과 차기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무보수로 봉사한다. 사무총장의 보수는 법인 회원이 결정한다.

제5.3항 — 사임. 임원은 누구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사임을 표명할 수 있으며, 그의 사임은 정식으로 수리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의사 표시를 한 경우 발효되는 것으로 한다.

제5.4항 — 해임. 위원장과 차기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이유 유무에 상관없이 관리위원회 회합에서 관리위원들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법인 회원의 이사회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제5.5항 — 결원. 위원장 직이 공석일 경우, 차기 위원장이 위원장 직을 승계한다. 그 외 임원직의 결원은 잔여 기간 동안 후임자에 의해 보충되며, 그 임원을 선출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후임자를 선출하여 임명한다.

제5.6항 — 위원장. 위원장은 법인의 최고직 임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가) 관리위원회를 대표한다.
- (나) 모든 관리위원회 회합을 주재한다.
- (다) 사무총장에게 조언한다.
- (라) 위원장으로서의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재단의 다른 관리위원이나 임원에게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모든 상임 위원회와 임시 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하며,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되나, 투표권은 가부 동수일 경우에만 행사한다. 위원장은 긴급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관리위원회나 집행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관리위원회를 대신하여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재단 법인 설립 규약과 세칙, 그리고 RI 정관 및 세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의거한 조치는 10일 이내에 관리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5.7항 — 차기 위원장. 차기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차기 연도 위원장으로서의 임기 준비 및 계획 수립
- (나) 위원장 또는 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업무 수행

제5.8항 —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또는 다음 관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위원장을 대신하여 활동한다. 그 밖에, 위원장이나 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9항 —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재단의 관리 책임자이며 재정 담당 임원으로서, 관리위원회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관리위원회의 방침을 집행하고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책임진다.

제5.10항 — 기타 임무. 상기에 열거된 임무와 권한 이외에 법인의 여러 임원들은 관리위원회가 수시로 위임하거나 결정하는 또는 위원장이나 기타 상위직(上位職) 임원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와 권한을 본 세칙에 따라 이행한다. 관리위원회를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는 임원은 누구나 그 일에 관한 처리 사항을 다음 관리위원회 회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제6.1항 — 위원수 및 임기. 법인의 관리위원회는 법인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위원회들을 수시로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위원 수와 임기는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단, 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가 관리위원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어떠한 위원회도 법인의 관리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보유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제6.2항 — 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과 소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고, 각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한다. 각 위원회는 적어도 2명의 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6.3항 — 회합.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고 그 통보에 따라 회합을 갖는다. 위원회의 과반수로 정족수가 구성되며 정족수가 참석한 회합에서 출석 위원 과반수의 결의가 그 위원회의 결의가 된다.

제6.4항 — 상임 위원회. 연례 회합 또는 기타 회합에 참석한 관리위원의 과반수 찬성 투표에 의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인은 집행 위원회, 재정 위원회, 프로그램 위원회, 개발 위원회, 그리고 스튜어드십 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의 위원 수와 임무는 관리위원회가 수시로 정할 수 있다.

제6.5항 — 임시 위원회.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시로 임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들 위원회는 항상 투표권이 있는 관리위원과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투표권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비 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7조 관리위원회와 법인 회원 이사회의 공동 위원회

제7.1항 — 위원 자격과 임기. 관리위원회와 법인 회원 이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관리위원회와 법인 회원 이사회의 공동 위원회가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공동 위원회는 3명 내지 5명의 법인 회원 이사와 동수의 관리위원들로 구성된다. 공동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이사는 법인 회원의 회장이 임명하며 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공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재임명 될 수 있다.

제7.2항 — 권한. 공동 위원회는 관리위원회와 이사회의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며 관리위원회와 법인 회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권고 의견을 제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7.3항 — 회합. 공동 위원회는 법인 회원의 회장과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공동 소집으로 회합을 갖는다.

제7.4항 — 결원.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법인 회원의 회장은 각각 그들이 임명한 회원이 사망하거나 사임 또는 임무 수행 불능으로 자격상실이나 해임될 경우 그 결원을 보충할 권한이 있다.

제7.5항 — 통고. 서면 통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모든 위원회 회합의 개최 시간(날짜와 시간)에 대한 서면 또는 인쇄물 통지서는 회의 개최일 최소한 30일 전에 해당 위원의 거주지나 통상적인 사업장으로 우송되거나, 혹은 회의 개최일 최소한 20일 전에 전신, 전화 또는 개별적인 전달 방법으로 해당 위원에게 전해져야 한다.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면 통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회의가 정당하게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의 처리를 반대할 목적으로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7.6항 — 정족수와 결의 방법. 공동 위원회에 임명된 재단 관리위원과 법인 회원 이사들의 과반수가 모든 회합에서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구성하며, 정족수가 참석한 모든 회합에서 출석 위원 과반수의 결의가 공동 위원회의 결의가 된다. 정족수가 안될 경우,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족수가 될 때까지 회합을 연기할 수 있다. 회합이 연기된 경우, 통지할 필요가 없다.

제8조 재무 보고

제8.1항 — 장부와 회계 기록. 관리위원회는 법인에 접수된 모든 재산이 오로지 법인 설립 규약에 규정된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단의 영수증, 지출 및 투자 내역 그리고 기타 모든 재산의 정확한 장부와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8.2항 — 보고. 관리위원회는 법인 회원의 이사회에 재단의 지출 현황과 재단 목적을 증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3항 — 회계감사. 본 법인은 매년 관리비로 법인 회원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고용한 회계사로 하여금 재단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관리위원회와 법인 회원 이사회에 배포하고 그 보고서를 적당한 형식으로 발행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8.4항 — 보증서. 관리위원회는 재단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보증서의 필요성과 그 금액을 결정하고 재단 관리비의 예산에서 보증서의 비용을 지급한다.

제8.5항 —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법인 회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8.6항 — 예산. 관리위원회는 매년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그 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

제8.7항 — 법인 회원의 봉사에 대한 비용 상환. 재단은 법인 회원들에게 제반 관리비와 관리위원들이 신청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관리위원회가 재단의 연간 예산을 채택할 때 이러한 경비 예상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산액에 따라 관리위원회는 회계연도 동안 수시로 이러한 비용을 지급한다. 회계연도 말에 재단과 법인 회원이 공동으로 심의하고 회계감사를 한 후, 초과액이든 부족액이든 예산과 실제 봉사 활동 경비 사이에 발생한 차액을 적의(適宜) 조정한다.

제9조 기타

제9.1항 — 면책. 재단은 본 조항과 관련된 1986년 일리노이주 비영리법인법 또는 미국 일리노이주가 채택한 어떠한 승계 법에서 인정하는 한도까지 현 및 전 관리위원과 임원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재단은 관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동 비영리법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까지 모든 위원회 위원, 대리인 또는 재단의 관리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다. 재단은 재단 관리위원회가 수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관리위원의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제9.2항 — 인감. 재단의 인감은 관리위원회가 수시로 채택하는 것으로 한다.

제9.3항 — 보조금 방침.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 (가) 로타리안, 단,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모든 자원봉사자는 예외로 한다;
- (나) 클럽, 지구, 그리고 기타 로타리 단체 또는 국제로타리의 직원;
- (다) (가) 또는 (나)항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 비속 (적자·적손 및 모든 합법적인 양자), 직계 자손의 배우자 또는 존속 (혈연 관계에 있는 부모나 조부모).

제9.4항 — 세칙 개정. 관리위원회는 본 세칙을 시기에 맞게 수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검토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가 그 수정을 승인하면 그 개정안은 법인 회원 이사회에 회부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칙의 개정안이 법인 회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법인 회원의 정관이나 세칙의 규정에 위배되는 세칙은 규정심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1983년 5월 31일 신청한
국제로타리의 로타리재단
법인 설립 규약 발췌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국제로타리의 로타리재단 (The Rotary Foundation of Rotary International)이다.

목적: 본 법인은 오로지 자선적이며 교육적인 목적 또는 1954년의 내국세 징수법 제501항 (c)(3) 또는 뒤에 나오는 연방 조세법의 동일 규정에 있는 목적 그리고 다음 목적을 포함하는 법인 회원이 승인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박애, 선의, 교육, 기타 자선적 성격을 가진 실체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촉진을 통하여 서로 다른 국가의 국민간의 이해와 우호 관계의 증진.

수입과 재산의 용도

(가) 본 법인의 재산과 순수입의 어떤 부분도 이사, 관리위원, 법인 임원 또는 어떤 개인의 이익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법인은 이미 완성된 봉사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포함하여 위에 설명된 목적을 증진하는 데 지급하고 분배할 수 있다. 본 조항의 어떤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은 1) 1954년 내국세 징수법 제5항 (c)(3) 규정 (또는 앞으로 나올 미국의 내국세 징수법의 동일 규정)에 따라 연방 소득세가 면제된 법인이나, 2) 그 기부금이 1954년의 내국세 징수법 제170항 (c)(2) 규정 (또는 앞으로 나올 미국의 내국세 징수법의 동일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공제될 수 있는 법인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어떠한 활동도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본 법인의 어떠한 활동에도 선전을 하거나 입법에 영향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나 활동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본 법인은 (성명서의 발행이나 배포를 포함하여) 공직에 입후보한 사람을 위하여 어떤 정치운동에도 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본 법인이 해산하거나 정리될 때 부채와 채무를 지급한 후, 그 재산의 전부를 (본 법인의 해산 시에 이전, 환불 또는 양도를 요구한다는 조건으로 이 법인에 양도된 재산은 제외) 본 법인의 법인 회원이 결정하는 대로, 위에 명시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1954년도의 내국세 징수법 제501항 (c)(3) 규정 또는 그 이후에 제정된 연방 세법의 동일 규정에 명시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구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법인 회원: 본 법인의 구성원은 한 종류이며, 이는 법인 회원으로 지명받은 유일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법인 회원의 선출 방법은 세칙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문제 이외에 법인 회원은 (관리위원이라고 하는) 법인의 이사들을 임명하는 모든 권한을 가진다. 법인 설립 조항과 세칙은 법인 회원의 승인 없이는 수정될 수 없다. 세칙은 추가 문제에 대하여 법인 회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